

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6년 1/4분기)

창업진흥원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해당없음(무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업무외 질병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	최대 2년	보수규정 제13조
병역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고용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유학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연수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육아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가족 간호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해외 동반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자기 개발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명령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기관고유사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해당없음(무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업무외 질병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	최대 2년	보수규정 제13조
병역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고용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유학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연수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육아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가족 간호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해외 동반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자기 개발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명령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기관고유사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해당없음(무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업무외 질병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	최대 2년	보수규정 제13조
병역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고용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유학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연수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육아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가족 간호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해외 동반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자기 개발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명령 휴직	해당없음(무급)	해당없음	보수규정 제13조
(기관고유사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5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34,403	3	11,467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04,552	7	14,936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35,399	3	11,799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43,297	3	14,432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56,067	4	14,016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5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6,610	1	16,610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1,678	3	3,892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45,138	3	15,046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7,059	2	8,529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비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5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9,574	1	9,574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자기 개발 휴직	-	-	-
	명령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기관 세부 작성기준

- 휴직급여를 제공하는 유급휴직만 공시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 및 재임기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및 규약에 따른다.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해당없음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감액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1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감액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의2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퇴직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기준급여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규약에 따른다.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함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명예퇴직금> ·대상 :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명예퇴직수당> ·명예 퇴직자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인사규정 제68조 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직위해제, 정직처분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보수규정 제16조~17조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퇴직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기준급여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규약에 따른다.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함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명예퇴직금> ·대상 :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명예퇴직수당> ·명예 퇴직자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인사규정 제68조 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직위해제, 정직처분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보수규정 제16조~17조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퇴직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기준급여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규약에 따른다.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함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조기퇴직 수당 등 지급기준	<명예퇴직금> ·대상 :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명예퇴직수당> ·명예 퇴직자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인사규정 제68조 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직위해제, 정직처분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보수규정 제16조~17조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20일(25일)	20일(2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 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되 는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 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 발 생 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족의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	
임신검진휴가		10일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일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 다 1일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일	
심리안정휴가		4일	-	
연차유급휴가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를 저축하여 최대 10년 내 사용 가능	- 계속 근로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간 8할 이상 출근 :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 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 가산 (총 휴가일수 한도 : 25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최 대 5일)를 저축하여 최대 5년간 사 용 가능	
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 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 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 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 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 할 때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 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 한 시험에 응시할 때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 사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 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위원회에 참 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 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 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 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 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 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 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 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 가할 때 7.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8.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 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 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 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의 예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 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 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 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병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60일 (180일)	60일 (180일)
모성보호시간	2시간/일 (임신중)	2시간/일 (임신중)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36개월 범위)	- 8세 이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24개월 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수유시간 : 1시간/일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20일(25일)	20일(2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 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되 는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 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 발 생 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 능) * 한부모 가족의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
임신검진휴가		10일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일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일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일
심리안정휴가		4일	-
연차유급휴가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를 저축하여 최대 10년 내 사용 가능	- 계속 근로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 만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1년간 8할 이상 출근 :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 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 가산 (총 휴가일수 한도 : 25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최 대 5일)를 저축하여 최대 5년간 사용 가능
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 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 ·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 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 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 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 할 때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 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 한 시험에 응시할 때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 사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 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위원회에 참 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 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 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 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 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 가할 때 7.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8.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 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 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병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60일 (180일)	60일 (180일)

모성보호시간	2시간/일 (임신중)	2시간/일 (임신중)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36개월 범위)	- 8세 이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24개월 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수유시간 : 1시간/일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20일(25일)	20일(2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 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되 는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 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 발 생 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족의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	
임신검진휴가		10일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일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일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일	
심리안정휴가		4일	-	
연차유급휴가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를 저축하여 최대 10년 내 사용 가능	- 계속 근로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 만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1년간 8할 이상 출근 :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 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 가산 (총 휴가일수 한도 : 25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최 대 5일)를 저축하여 최대 5년간 사 용 가능	
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 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 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 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8.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병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60일 (180일)	60일 (180일)
모성보호시간	2시간/일 (임신중)	2시간/일 (임신중)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36개월 범위)	- 8세 이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24개월 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수유시간 : 1시간/일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20일(25일)	20일(2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	3일	3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 일수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되 는 경우 1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2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정자채취	1일	1일
포상 휴가		10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장애인 자녀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자녀수에 +1일(유급) 연간유급일수에 +1일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 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족의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
임신검진휴가		10일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일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일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일
심리안정휴가		4일	-
연차유급휴가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를 저축하여 최대 10년 내 사용 가능	- 계속 근로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1년간 8할 이상 출근 :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 가산 (총 휴가일수 한도 : 25일) * 매년 말일 기준 잔여 연가 일수(최대 5일)를 저축하여 최대 5년간 사용 가능
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 ·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8.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병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60일 (180일)	60일 (180일)
모성보호시간		2시간/일 (임신중)	2시간/일 (임신중)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 8세 이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하 자녀 : 최대 2시간/일 (36개월 범위)	(24개월 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수유시간 : 1시간/일
--	------------------------------	---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	최대 12일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	최대 12일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	최대 12일
취업지원 휴가 (청년인턴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회당 1일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제출일	2026년 04월 13일
-----	---------------	-----	---------------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강정호	미래인재실	044-410-1598
감독자	이창형	기획조정실	044-410-1560
확인자	김정호	감사실	044-410-1540